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해 양 경 찰 청 소 속 경 찰 공 무 원
임 용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안이유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국가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개정·시행 중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 해양경찰청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반영하고, 임용권의 위임 및 승진심사 제도개선 등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해·수산계고 채용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응시연령과 자격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필기시험 과목을 현행화·변경하여 경력채용의 시험방법을 정비하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직급별·임용행태별로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직접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임용시기의 특례 중 직위해제 시점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여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비(안 제6조)

다. 해수산계고 채용 시 조기졸업자 및 조기입학자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과 응시연령 관련규정을 개선(안 제16조, 별표 3)

라. 우수인력 확보와 다른 경력채용 분야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5급 공채 경력자의 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도록 하고, 경채시험 절차에서 전(前) 단계 불합격 시 다음단계 응시가 불가함을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마.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기존 휴직기간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기간도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안 제54조)

바. 승진심사 평가·추천 시 현행 “기관의 장”에서 실제로 승진대상자를 평가·추천하고 있는 부서장을 포함하도록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68조제1항)

사. 경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전산분야의 “정보관리론”을 “정보보호론”으로, 해양경찰학과 경채분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으로 변경(별표 6)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 규정의 명확성·논리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체계 정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은”을 “임용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를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공무원 중 경정”을 “경정인 경찰공무원”으로, “이하”를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찰공무원 중 경정”을 “경정인 경찰공무원”으로, “이하”를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을 “조정, 승진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
제4조제4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를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를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조 중 “연수”를 “연수(年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선임”을 “선임(先任)”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넘는”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를 “(임용예정계급은 경사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졸업예정자”를 “졸업예정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자”로, “(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를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과”를 “서류전형,”으로, “실기시험 및”을 “실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서류전형·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하며, 같은 호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제24조를”을 “제24조를 준용하고,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로 한다.

제28조의2제4항 중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반영한다”를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 중 “실기시험 및”을 각각 “실기시험,”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을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의 보직)”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교체하는”을 “전보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근신·영창”을 “근신·군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연수(年數)”를 “연수”로 한다.

제6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평가
· 추천

제84조제1항제5호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제1항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공통	27세 이상 40세 이하
		항공 분야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경위	-	공통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항공 분야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공통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 분야	20세 이상 30세 이하
		해수산계고교 분야	17세 이상

별표 6의 경사 · 경장 · 순경의 필수 중 “정보관리”를 “정보보호”로 하

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해사영어·해양경찰학개론·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해사영어·해양경찰학개론·형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u>임용에 관하여는</u> ----- ----- ----- -----.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 ----- ----- ----- ----- ----- -----.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u>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u> 및 복직에 관한 권한	1. ----- ----- <u>경감 이하 경찰공무원</u> ----- ----- <u>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u> -----
2.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u>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u>	2. ----- ----- ----- ----- <u>경정인 경찰공무원</u> -----

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
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
의 임용권

3.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
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
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
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
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
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
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
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
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

----- 이하
경찰공무원-----

3. -----
----- 경정인 경찰공무
원----- 이하 경
찰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조정, 승진임용

-----.

④ -----

-----.

-----.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에 관

권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
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
임용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
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
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
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
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
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
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 파
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
에 관한 권한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
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생 략)

한 권한

2. -----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⑤ -----

-----.

-----.

1. 해양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권
한

2. ----- 경사 이하 경
찰공무원-----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

-----.

1. (현행과 같음)

2. <u>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u> 3. · 4. (생략)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u>연수</u>를 합하여 계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u>선임</u>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삭 제> 2. ·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 ----- ----- ----- 연수(年數)-----.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선임(先任)</u>-----.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	--

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나.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
 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나. (생략)

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초과하는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임용예정
계급은 경사 이하로 한다)

가.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졸업예정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1년 이
내 졸업자-----
-----(임용예정계급은 순경
으로 한다)

6. (생 략)

④ 삭 제

⑤ ~ ⑦ (생 략)

제25조(시험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
사,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
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무
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
쟁채용등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0조제3항제3호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
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

6.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서류전형, -----

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

----- 실기시험, -----
--. -----

-----.

3. -----
----- 서류전형 -----.
<후단 삭제> -----

------.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4조를 준용하고,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 --.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

경쟁채용시험) ① ~ ③ (생략)

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생략)

② 제25조제1항제5호(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

경쟁채용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

-----.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활용한다.

③ -----

-----.

1. ----- 실
기시험, -----

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
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3. (생략)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
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
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
00퍼센트로 한다)

5.·6. (생략)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
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
게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 실기시험, ---

5.·6. (현행과 같음)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

1. ~ 5. (생략)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생략)

② ~ ⑥ (생략)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 ② (생략)

제4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 8. (생략)

9.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
수임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 16.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 「공무원 임
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 따른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의 보

직) ①·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전보의 제한)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

전보하는 --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2. (생략)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생략)

나.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근신·군기교육 -----

-

4. (현행과 같음)

② -----

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생략)

제57조(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5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4. (생략)

5.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평가·추천

---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경력 평정) ① -----

----- 연
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평가·추천

6. (생 략) ② (생 략) 제8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 4. (생 략) 5.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생 략) ②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 따른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